

“행정 낭비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하자”

최인가·조영택 등 ‘지방행정체제 기본법’ 발의

“지자체 통합 관련 단체장에 주민투표 요구”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 해당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광역시의 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도를 통폐합, 역할을 축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인가·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이 위원회가 지자체의 통합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정한 뒤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시·군·자치구의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행정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통합에 대한 주민과 공직자들의 피해의식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로서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안건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하고 통합자치단체는 종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광역시는 종전과 같은 지자체로 유지되되 관할구역 내 자치구와 군은 단체장만 선출하고 의회는 설치하지 않으며 대신 군정협의회나 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역의원을 통해 자치구·군의 행정을 충분히 견제·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구·군의원이 자질 논란을 종식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해석된다.

도의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후견적 기능·감독적 기능·중재적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한 대신 국가위임사무의 처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의 수행, 관할구역 내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한 광역적 사무 등에 국한하도록 하는 등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인구·면적·경제권·생활권 등을 고려해 도를 통폐합하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우 지정시, 50만명 이상이면 중핵시, 30만명 이상이면

특정시로 구분함으로써 인구 규모에 따라 법적 지위와 행정상 특례를 달리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행정조직으로 큰 의미를 상실한 읍·면·동은 주민자치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문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되,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토록 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통해 일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사회가 행정의 단위 및 주체가 돼 공동체 내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완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디어법 질의서 전달하는 이강래 대표
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의 산회 후 야당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민주당 이강래(앞줄 왼쪽) 원내대표가 미디어법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세종시 윤곽

李대통령, 내달 입장 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세종시 건설 수정 논란과 관련, ‘충분히 숙고해야 하며 한나라당에서 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연 어떠한 수순으로 여권의 결정이 이뤄질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세종시 수정 건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 세종시 건설 수정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어느 정도 지켜본 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면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세종시 건설 수정 논란에서 비켜서 충분히 숙고하는 모습을 보인 뒤 최종 결정 과정에서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현재 작성 중인 세종시 수정안이 이달 중 공개되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내달에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는 5~10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건설 수정안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선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9부2처2청의 정

부부처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현행 세종시 안을 기업·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수정 초안이 제시되면 총리실이 자문기구 성격의 가장 세종시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세종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한나라당이 세종시 관련 기구를 출범시켜 당정 간의 여론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마련되면 정 총리는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얻은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는 시기를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에 대한 기본 구상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만큼 수정안 마련도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공개되면 민주당 등 야당과 충청지역의 강력한 반발 등 세종시 건설 수정 논란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지켜보다 핵심 논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고 다음 달 초중반에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안상수 “세종시 논쟁 중단하자”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제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세종시 건설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의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축소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지만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 ▲물부족 문제 해결 ▲자연생태계 복원 ▲홍수에방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 “정치적 의도나 편

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서민대책과 관련,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해 중산층이 두터운 ‘황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신(新) 중산층 육성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그는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의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방선거 공천 혁신해야”

김근태 고문 전남대 강연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3일 “10·28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민주당은 그 반사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투쟁성과 개혁성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오후 전남대 융복합에서 열린 비전향반도포럼과 5·18연구소 주최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사상 대강좌’

초청 강연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 대치 전선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확고한 승리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당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회상하면서 “만일 민주·개혁 세력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한반도가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김 고문은 “광주시민의 가슴에 새롭고 뜨거운 열정이 모아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3대 위기(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관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광주시민과 함께라면 기꺼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고문은 “민주당 변화·혁신의 바로미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 공천에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손학규 지지도 급상승

대선후보 여론조사 8.5% 3위

지난 10월 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초로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며 향후 야권 세력판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폴리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 차기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3%p)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1.3%로 선두를 유지했으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0.2%로 2위, 손학규 전 대표가 8.5%로 3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부정·비리 전과자가 배제된 정이사가 즉각 선임되어야 합니다

1.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3.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4.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5.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6.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7.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8.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9.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0.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1.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2.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3.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4.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5.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6.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7.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8.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19.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0.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1.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2.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3.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4.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5.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6.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7.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8.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29.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30. 학교법인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학교의 운영에 사용한다.

민주적 정이사 선임을 위한 범조선대학교생태위원회